

전주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가단192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2. 4. 1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등기와 2022. 4. 26. 접수 제356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21. 8. 24. 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2021. 7. 30.자 기준 남은 원금 35,956,033원, 지연손해금 7,432,057원)을 양수하고, 2021. 9. 8.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C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나. 피고와 C 등의 상속재산협의분할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7. 6. 16.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와 C 등 3명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공동상속인들은 2022. 4. 19.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하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2. 4. 26. 접수 제3560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2. 4. 26. 접수 제35608호로 2017. 6.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이 2022.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분할협의 약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2017. 6. 16.이 아니라 실제로는 2022. 4. 19.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가 2022. 4. 19.로부터 5년 이내인 2022. 6.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이 유일한 재산인 C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C의 어머니인 수익자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C의 상속분인 2/9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

별지